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난지역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포함〉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62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나아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3인
2. 제안연월일 : 2025. 2. 24.
3. 회부연월일 : 2025. 2.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產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에서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만으로는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產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복구 및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명확히 명시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이 지

속적인 경영 안정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제7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지역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생산비¹⁾ 등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생략)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② -----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 재해대책법」----- ----- -----.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② (생략)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	③ ----- ----- ----- ----- -----, ----- -----

1) 생산비: 농업 기초 작업부터 재해 발생까지 농업 생산을 위해 소비한 일체의 비용

현행	개정안
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이자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產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u>복구를 위한 지원</u>	7. ----- ----- ----- <u>복구 및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u>
8.·9. (생략)	8.·9.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규정²⁾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 대상으로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產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³⁾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른 지원만으로는 재난으로 인해 농가 등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도 포함하려는 것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의 손실을 최대한 보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 현황 및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첫째, 개정안은 재해로 인해 농업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보조할 수 있는 범위를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최대한’으로 규정⁴⁾하고 있어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에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4년 11월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되어 2024년 12월 6일 정부로 이송되었으나,

생산비 수준의 재해 보장은 현행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의요구 되었고,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결과 부결되었음.

따라서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규정상으로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4)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이념⁵⁾으로 하는바, 이에 따라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을 실시⁶⁾하고 있음.

‘최소한의 생계유지’ 비용 이상의 농작물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통해 보험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생산비 등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도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지급하게 될 경우 ‘최소한의 생계유지’ 비용을 지원하는 현 제도의 목적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 제도의 운영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음.

또한, 농어업 분야에 대해서만 재해 발생 이전의 투입비용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경우 소상공인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이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문제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농어업 분야의 재난 피해에 대하여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까지 피해복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 현황 및 현행 제도의 운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재해 복구지원 제도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이므로 재해 발생 이전의 투입비용 지원은 현 제도와 상충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현 제도 범위 내에서 복구단가 인상, 지원을 상향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